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825

발의연월일: 2022. 8. 10.

발 의 자:이원욱·강득구·김영배

김영진 · 김원이 · 김철민

송옥주 · 이탄희 · 전용기

최종윤 · 홍성국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숙련기술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및 처우 등으로 구직자들의 기술직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향후 산업현장의 기술력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제기되어 옴.

이에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정하여 관련 행사를 개최하게 함으로써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숙련기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련기술장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숙련기술인의 날 지정) ① 숙련기술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숙련 기술인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숙련기술인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8조의2(숙련기술인의 날 지정)
	① 숙련기술인에 대한 국민 인
	<u>식의 제고 및 사회적·경제적</u>
	지위 향상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숙
	련기술인의 날의 취지에 부합
	<u>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u>
	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